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1. 9. 13 선고 2021가단20538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유한회사

피 고 1. B

2. C

변 론 종 결 2021. 8. 24.

판 결 선 고 2021. 9. 13.

주 문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2/15 지분에 관하여,
가. D와 피고 B 사이에 체결된 2011. 1. 25.자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나. 피고 B는 D에게 대구지방법원 영주등기소 2018. 9. 19. 접수 제1537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가. D와 피고 C 사이에 별지 목록 제2, 3항 기재 각 부동산 중 2/15 지분에 관하여 체결된 2011.
1. 25.자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나. 피고 C은 D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2/15 지분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영주등기소
2018. 9. 19. 접수 제1536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 중 2/15
지분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18. 9. 19. 접수 제15371호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D에 대한 채권

1) 주식회사 E은 D에 대한 신용카드 대출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위 채권은 F 주식회사를 거쳐 원고에게 차례로 양도되었다.

2)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소5308852호로 ‘D는 원고에게 18,352,191원 및 그 중 6,455,248원에 대한 2015. 5.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아 그대로 확정되었고, 그 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차전331858호로 ‘D는 원고에게 4,946,745원 및 이에 대한 2009. 10.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으며 이 역시 확정되었다(이하 원고의 D에 대한 위 채권을 ‘이 사건 양수금채권’이라고 한다).

나. 상속재산 분할협의

1) 피고들과 D는 자매 사이이고, 아버지인 G의 사망 당시 D의 상속지분은 2/15이다. 2) G가 사망한 후 2018년경 피고들과 D를 비롯한 G의 상속인들은 상속재산인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은 피고 B가, 같은 목록 제2, 3항 기재 각 부동산은 피고 C이 각 단독 상속하는 것으로 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라고 한다)하였다. 이에 따라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대구지방법원 영주등기소 2018. 9. 19. 접수 제15370호로 피고 B 앞으로 2011. 1. 25.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같은

등기소 2018. 9. 19. 접수 제15369호로 피고 C 앞으로 위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같은 등기소 2018. 9. 19. 접수 제15371호로 피고 C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다. D의 재산 상태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D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상속지분 이외에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는 상태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관악구청장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사해행위 취소)

가. 피보전채권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분할협의 이전에 원고의 D에 대한 이 사건 양수금채권이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양수금채권은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D가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자신의 상속지분을 포기하여 피고들로 하여금 상속받게 한 것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다. 취소 및 원상회복의 범위와 방법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 양수금채권액은 12,000,125원[= 4,946,745원 × (11 + 322/365)년 × 12%, 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이고,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2/15 지분의 가액은 1,310,400원(= 공시지가 16,800원/㎡ × 585㎡ × 2/15), 별지 목록 제2, 3항 기재 각 부동산 중 2/15 지분의 가액은 1,281,333원(= 9,610,000원 × 2/15)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사해행위 목적물 가액의 합이 피보전채권액에 미치지 못하므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협의분할은 모두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D에게, 피고 B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2/15 지분에 설정된 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 C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2/15 지분에 관하여 설정된 소유권이전등기 및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 중 2/15 지분에 설정된 소유권보존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들의 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D의 채무내역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였고, D가 피고들로부터 차용한 후 변제하지 못한 돈이 많아서 그 대가로 자신의 상속지분을 포기한 것이라며 선의의 수익자라는 취지로 항변한다.

그러나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들이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D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다거나, 이 사건 분할협의를 채권자인 원고를 해한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항변은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판사 이정현

별 지 목 록

[토지]

1. 경상북도 영주시 전 585㎡
2. 경상북도 영주시 대 301㎡

[건물]

3. 경상북도 영주시

[도로명주소]

경상북도 영주시

목조 기와지붕

단층단독주택 55.5㎡

